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40호 2023. 2. 28.(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18호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남해군 고시 제2023-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3

남해군 고시 제2023-20호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입지 결정·고시 4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187호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남해군 공고 제2023-196호 지방도 1024호선 선구지구 굴곡도로 개량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추가 청취 공고 17

남해군 공고 제2023-197호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 19

남해군 공고 제2023-209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29

남해군 공고 제2023-213호 2023년도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31

남해군 공고 제2023-220호 공시 송달 공고 40

남해군 공고 제2023-227호 군계획시설(방재시설 : 하천) 공사완료 공고 41

남해군 공고 제2023-249호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2

남해군 공고 제2023-266호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 50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18호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2월 15일

남 해 군 수

- 1.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 : 붙임 참조
- 2.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

[붙임]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1.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9	8~12	국지 도로	449	남해읍 남변리 402-1	남해읍 서변리 319-8	일반 도로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9	8	국지 도로	449	남해읍 남변리 402-1	남해읍 서변리 319-8	일반 도로			도시지역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39	소로2-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원축소 - B = 8~12m→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여건 및 지적경계를 반영하여 도로폭원 일부를 변경함으로써 주민불편 및 재산권 침해사항을 해소하고자, 금회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선거관리사무소	공공청사	남해읍 심천리 912-7	1,650	감)64.4	1,585.6	경고2011-135호 (2011.04.21.)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선거 관리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남해읍 심천리 980-3일원 → 남해읍 심천리 912-7 ○ 시설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1,650m² → 1,585.6m² 감)64.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조성되어 운영중인 선거관리사무소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시설선형 변경

남해군 고시 제2023-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동천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삼동면장)
3. 주 소 :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876번길 12
4. 점용목적 : 동천천 조명설치 공사
5. 점용위치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042번지(1063-4인근)
6. 점용면적 : 48㎡
7. 점용기간 : 2023. 2. 17. ~ 2023. 12. 31.(준공 후 영구점용)

남해군 고시 제2023-20호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입지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입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남해군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종 류 : 폐기물 매립시설
 - 규 모 : 매립용량 - 135,357m³
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 남해군 전지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 위치 :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1840번지 일원
 - 지번 및 지목 : [붙임 참조]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 약44,274m²
 - ※ 실시 설계에 따라서 부지면적 및 편입토지는 변경될 수 있음
6. 열람기간 : 2023. 2. 20. ~ 2023. 3. 23.(18:00) (고시일로부터 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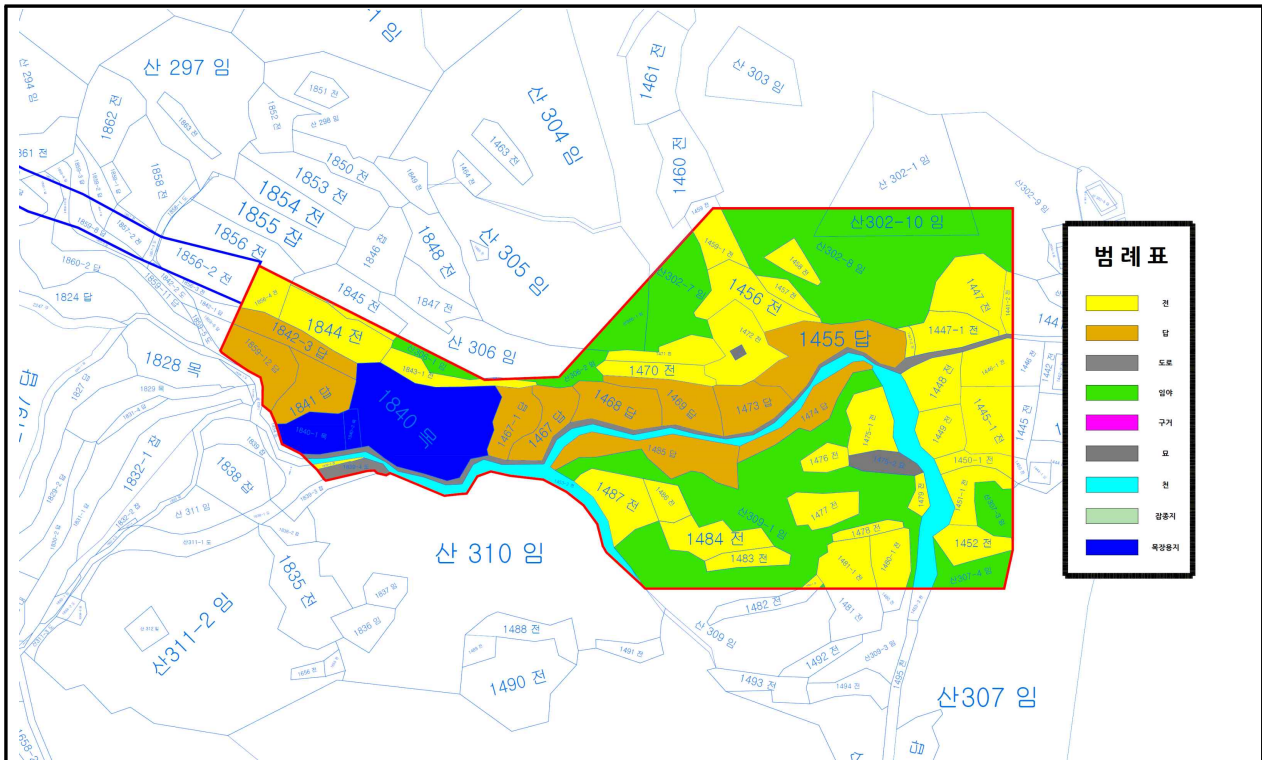
7. 열람장소 : 남해군청 환경과(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87)

8. 열람사항 : 토지조서 및 도면

※ 기타문의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과(☎055-860-3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치도



■ 지번 및 지목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1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1	2	전	131	131	남해군
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5	1	전	742	742	남해군
3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6	1	전	486	486	남해군
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7		전	875	875	남해군
5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7	1	전	556	556	사유지
6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7	2	전	60	60	사유지
7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8		전	572	572	사유지

남 해 군 공 보

(6) 제 740 호

2023년 2월 28일

8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9		전	476	476	남해군
9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0	1	전	265	265	사유지
10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1	1	전	463	463	남해군
11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2		전	443	443	남해군
1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3	2	천	2,416	2,416	국유지
13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4	1	도	766	766	국유지
1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5		답	1,359	1,359	사유지
15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6		전	803	803	남해군
16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7		전	205	205	사유지
17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8		전	248	248	사유지
18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9	1	전	414	414	남해군
19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67		답	574	574	사유지
20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67	1	답	570	570	사유지
21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68		답	737	737	남해군
2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69		답	734	734	남해군
23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0		전	367	367	남해군
2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1		전	456	456	남해군
25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2		전	866	866	사유지
26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2	1	묘	30	30	사유지
27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3		답	641	641	사유지
28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4		답	641	641	사유지
29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5	1	전	602	602	남해군
30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5	2	묘	288	288	남해군
31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6		전	238	238	남해군
3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7		전	486	486	남해군
33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8		전	169	169	남해군
3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9		전	132	132	남해군
35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0	1	전	471	471	남해군
36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1	1	전	556	556	남해군
37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2	1	전	37	37	남해군
38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3		전	321	321	남해군
39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4		전	648	648	사유지

40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5		답	1,140	1,140	남해군
41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6		전	288	288	남해군
4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7		전	764	764	남해군
43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39	2	잡	41	41	남해군
4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39	4	도	183	183	남해군
45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0		목	2,644	2,644	남해군
46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0	1	목	532	532	남해군
47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0	2	목	131	131	남해군
48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1		답	770	770	사유지
49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2	3	답	555	555	남해군
50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3	1	전	432	432	남해군
51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4		전	912	912	남해군
5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5	1	전	111	111	남해군
53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56	4	전	352	352	사유지
5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59	12	답	724	724	남해군
55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2	7	임	1,180	1,180	남해군
56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2	8	임	4,149	4,149	남해군
57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2	10	임	958	958	남해군
58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5	1	임	502	502	사유지
59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6	1	임	224	224	남해군
60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6	2	임	285	285	남해군
61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7	3	임	409	409	남해군
62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7	4	임	514	514	남해군
63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9	1	임	5,626	5,626	남해군
64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9	2	임	4	4	남해군
계							44,274	44,274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187호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2. 개정이유 : 주부로 한정되어 있는 대원을 일반 여성 전체로 확대하고 만65세로
제한하고 있는 편성기준을 폐지하여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여성민방
위기동대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변경
 - 나. 기동대원의 나이 제한 항목 삭제(안 제4조제2항)
 - 다. 대장 임기에 관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7조)
 - 라.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7조)
 - 마. 용어 변경 : “주부” → “여성” 변경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3월 6일까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2,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전화 055-860-34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 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주부민방위기동대” 를 “여성민방위기동대” 로 한다.

제2조 중 “주부민방위기동대” 를 “여성민방위기동대” 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주부민방위기동대” 를 각각 “여성민방위기동대” 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편성” 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편성기준)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 전단 중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를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구분하여” 를 “구분하여 별표 1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복무 및 교육훈련” 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실비 지급 등 지원” 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실비 지급 등)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
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 등

제19조 앞에 “제5장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등” 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를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주부민방위기동대” 를 “여성민방위기동대” 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주부민방위기동대” 를 “여성민방위기동대” 로 한다.

별표 3은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부민방위기동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편성된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로 본다.

[별표 1]

여성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평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창고 점검 3.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4.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5.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6. 주민의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7.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8.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9.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10. 그밖에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민방위사태 · 재난발생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작전 필요 물자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3. 민방위사태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5. 비상급수·관리 지원 6. 사후관리 복구 지원 7. 재난 해제·복귀 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 군수가 민방위 활동 및 재난 예방·복구 활동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항

[별표 2]

여성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제9조제2항제3호 관련)

반 명	분 장 업 무
지휘반	1. 기동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운영에 관한사항 4. 대의 기율에 관한 사항
재난활동반	1. 민방위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사태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민방위시설, 장비, 창고 등 점검 5.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6. 학교, 실전체험훈련장 등 보조강사 지원 7.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8.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지원
생활안전반	1. 주민의 생활안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 4. 안전캠페인 활동 5. 취약계층 인원·시설 등 안전 돌봄 지원 6. 심폐소생술 등 홍보 및 활동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지원자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세 대 주 와 의 관 계	의
보유기술 및 기 능	종 목			
	취 득 일			
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제 출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여성민방위기동대 지원 필증

지원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수 (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편성지원 시점부터 편성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남해군수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소속	성명	직위	이메일	연락처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	○○○	주무관	ooooo@korea.kr	055-XXX-XXXX	○○○

남해군 공고 제2023-196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추가 청취 공고 「지방도 1024호선 선구지구 굴곡도로 개량공사」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1024호선 선구지구 굴곡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3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선구리 1146-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굴곡도로 개량공사

- 명 칭 : 지방도1024호선 선구지구 굴곡도로 개량공사

다. 사 업 량 : L=190m, B=6.5m(8.5)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

2. 열람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14일간, 남해군 건설교통과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3. 2. 13. ~ 2. 27. (14일간)

나. 제출방법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의견서 제출

다. 기타 상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4, 3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도1024호선(신구지구골곡도로)개발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적 (㎡)	권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군	면	리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남해	남	신구	1168-1		168	168	김*중	남해군 남면 선구리 1**6	김*열	부산사하구 하신번영로 233, ***동***호(여민동 가림타운)		재산세납부
	소 계		합계			168	168						

남해군 공고 제2023-197호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4일

남 해 군 수

1. 행정예고 목적 :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3. 시 행 청 : 경상남도 남해군
4. 공고기간 : 2023. 2. 14. ~ 2023. 3. 6.(21일간)
5.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www.namhae.go.kr)
6. 관련근거
 -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 나.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운영예정 장소 및 운영관리 : 남해군청 전 부서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8. 촬영범위 및 시간

- 가. 촬영범위: 근거리
- 나. 촬영시간: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9. 운영목적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10.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 민원지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3. 3. 6.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제출서식 : 의견제출서(※ 붙임 참조)
- 제출기관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 주 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팩 스: 055-860-3700
- 문 의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055-860-3001)
-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남해군 예규 제 호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 “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음성의 녹음
 -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한다.

- 5. “음성기록” 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 6.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 7.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8.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 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및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 “위법행위 등”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른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
-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 5.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송된 영상 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지정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 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피탈당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하여야 한다.
3. 기관 내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책임자 등 지정)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 부서장
 2.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 주무팀장
- ②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부)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정보를 운영·관리할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기관리 및 보안 등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시스템 관리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입·출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출고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④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피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
-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 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종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여야 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장 기록물 관리 및 교육

제12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사용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209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천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천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출입구간 :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988-8번지 외 18필지(붙임 참조)

2. 출입기간 : 2023. 2. 15. ~ 사업 종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장)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재난안전과 (☎055-860-32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성 명
				대장면적	편입면적		
1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988-13	전	91	9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정영오
2	"	988-7	임	1,095	1,095	부산 남구 옹호동	정영오
3	"	988-6	전	1,844	1,844	부산 남구 옹호동	정영오
4	"	988-8	전	759	759	부산 남구 옹호동	정영오
5	"	988-10	대	273	27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이택오
6	"	988-9	임	2,030	2,030	부산 남구 옹호동	정영오
7	"	988-16	대	124	12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최태오
8	"	988-11	임	380	380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김덕오
9	"	988-17	대	92	9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이훈오
10	"	988-18	대	43	43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진혜오
11	"	984-4	대	188	188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진혜오
12	"	988-15	전	233	233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진혜오
13	"	988-2	대	267	267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위제오
14	"	983-1	전	13	13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위제오
15	"	983	전	60	60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하순오
16	"	988-19	대	84	84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하순오
17	"	984-5	대	183	183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하순오
18	"	984-8	대	57	5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정순오
19	"	984-7	대	28	28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청룡길	류규오
합 계				7,844	7,844		

남해군 공고 제2023-213호

2023년도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농어촌의 노후·불량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남해군의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남 해 군 수

■ 사업개요

- 사업물량 : 10세대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군비(100%)	비 고
20,000	20,000	세대 당 20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범위

- 창호나 도배, 장판, 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 관련 부분의 공사에 한함
- ※ 창고, 대문, 담장 등 거주와 관련 없는 수선, 가구 및 집기(싱크대) 구입 및 설치 제외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전입신고일 기준 관내 전입 2년 이내인 세대 및 전입예정자(전입 및 수선완료 후 보조금지급)에 한함.)

- 전입신고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착을 위하여 관내 빈집을 매매 또는 임차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의 세대주
 -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인 경우에만 지원가능 (전입예정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인 경우)
 - ※ 수리 후 전입신고 가능 (전입신고 및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지원요건

- ▶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주택에 한함(아파트, 사택, 고택 등 제외)
- ▶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 불가)
- ▶ 세대주 소유의 주택 및 세대원 가족명의(배우자, 자녀 등) 주택은 가능
- ▶ 임대주택일 경우 임대차계약서(3년 특약) 및 소유자의 수선동의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신청 전 수선을 완료 한 세대
- 타시·군·구에서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세대
- 철거, 신축 및 증축은 제외
- 불법건축물,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사망 후 미상속 주택 제외

■ 신청 안내 및 자격 검토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한 : '23. 02. ~ ' 22. 12. (연도별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
- 지원 자격 주요 검토 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확인서류
빈집해당여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전입예정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 이상 빈집)	마을이장 확인서 현지조사 등
이주기간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이상 타 시·군·구 거주	주민등록초본
신청자격	세대주(주민등록등본 기준)	주민등록등본
거주기간	남해군 거주기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자 (※신청당시 미전입자는 전입 후 실거주 3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	주민등록초본 현지조사
주택확인	세대주 소유 주택 :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함께 전입하는)명의인정,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3년이상) 및 수선 동의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현지조사

■ 사업절차 및 유의사항

-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보조금교부신청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정산
 - 보조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내역서(업체도장 필), 공사 전·중·후 사진 첨부

해야 하므로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공사하지 않도록 하고, 첨부서류 미비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첨부.
- 사업완료 후 보조금은 기재출한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지급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게로 이체하고 증빙하여야 정산 가능하므로 다른 지출수단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
- 자부담 금액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청구서와 같이 제출해야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사후 관리

- 교부 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90일 이내에 사업 미착수 등 교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교부 결정 취소
-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입신고 완료 및 실거주 3개월 이내에 타 지역 전출 등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대상자의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가구에 대한 거주실태 등 연1회 이상 점검

[붙임 1]

남해군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 빈집 현황 (※건축물대장, 빈집해당여부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111

▷ 소유자(관리자)

- 성 명 : 홍 길 동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111

▷ 방치된 기간 :

▷ 규모 : 1 층, 연면적 50 ㎡,

▷ 빈집해당여부 증빙서류 : 1. 빈집 확인서(마을이장·읍면 담당자 날인)

2. 상/하수도 사용량 확인 서류 전력 사용량(기본요금 납부 이력)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해당

※ 전입신고일 기준 관내 전입 2년 이내인 세대 및 전입예정자(전입 및 수선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한함.

○ 신청자 현황 (※주민등록등초본 반드시 확인 후 첨부)

▷ 이 름 : 홍 길 동

▷ 전입여부체크 : 전입예정(예정일 2023.1.1) / 전입완료(전입일 2023.1.1)

▷ 전입인원 : 명 (본인제외)

○ 해당사항 체크

6월 이내 사업완료 가능 자녀가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학교명 기입)

상기 빈집을 수선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세대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선정될 경우 사업기간내에 반드시 수선하여 아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완료보고토록 할 것입니다.

<p>※ 신청 시 첨부 서류</p>	<p>수선계획서(견적서 및 타인견적서 첨부), 청렴이행서약서, 건축물 대장, 빈집 확인서, 빈집 해당 여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빈집수선동의서 + 대상자 선정 이후 > 보조사업 전용 신규 보조금통장 사본</p>
<p>※ 완료보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p>	<p>세금계산서(사업자 없는 개인에게 공사 하지 않도록 유의) 공사내역서(업체 도장 필), 수선 전·중·후사진(일자별, 공정별 촬영), 보조금 청구서</p>

2023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연락처 :

성 명 : (인)

[붙임 2]

2023년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수선계획서

주택위치	(지번) (도로명)	주거상태	자가/전세/월세/기타(무상임대 등)
수선계획	예시 : 도배/장판/화장실(타일,변기)/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위치도			
건물현황 (외부전경)	*주택 외부 전경과 내부 각각 첨부		

<p>건물현황 (내부)</p>	<p>*주택수리 대상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사진 첨부</p>
<p>건물현황 (내부)</p>	<p>*주택수리 대상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사진 첨부</p>

(첨부)

1. 견적서 · 타인견적서 각1부
2. 건축물대장
3. 주민등록초본
4. [붙임3]빈집 확인서, 상/하수도 사용량 확인서 또는 전력량(기본요금 납부 이력) 확인서
5. [붙임4](임차인의 경우)건축물 소유자의 빈집수선동의서
6. [붙임5]청렴이행서약서

[붙임 3]

확 인 서

○ 건축물현황

- ▷ 위 치 :
- ▷ 규모 :
- ▷ 지붕구조 :
- ▷ 건립년도 :

○ 현 거주자

- ▷ 주 소 :
- ▷ 성 명 :

상기 위치의 건물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현 거주자가 사용함을 확인 합니다.

2023년 월 일

담 당 자 : (인)

마을이장 : 마을 (인)

[붙임 4]

전입세대 빈집 수선 동의서 (소유자)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현황

주택 소재지	신청인(임차인)	연락처	비 고

상기 본인은 위 주택의 현 소유자로서 임차인이 임차한 본인의 주택에 대하여
2023 전입세대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동의합니다.

임대인(소유자) : (인)
임대인 연락처 :

2023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붙임 5]

청 령 서 약 서

2023년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청령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남해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남해군에서 요구하는 청령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남해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 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 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 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 당 벌금형 부과

2023. . .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성명 (서명)

남해군 공고 제2023-220호

공시 송달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2. 13.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2. 사업의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일원
-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3. 2. 13.)
- 5. 공고 기간 : 2022. 2. 16. ~ 2022. 3. 3.(15일)
- 6.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또는 토지소재지	비 고
1	과평윤씨입남 시조산 대표 윤영문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78번안길 27	공시송달 대상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 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남해군 건설교통과(☎ 055-860-3314)

남해군 공고 제2023-227호

군계획시설(방재시설 : 하천)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남해군 군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 :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사업(소하천27, 북변천)
 - 명 칭 :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 사업의 규모(면적) : 소하천정비 0.57km, 교량정비 2개소(A=13,578㎡)
4. 사업시행자
 - 성 명 : 남해군수(상하수도과)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남해읍 에코파크길 64-10, 상하수도과)
5. 사업기간 : 2019. 04. 02. ~ 2022. 02. 28.
6. 관계도서 열람 및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또는 상하수도과(055-86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3-249호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전면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 등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
- 나.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안 제2조)
- 다.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안 제3조)
- 라. 위험도 평가단원 임기 및 해촉 명시(안 제4조,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3월 13일까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93,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55-860-32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군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 내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 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본부장은 군 내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해촉)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평가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6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편성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으로 본다.

[별지 서식]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사 진

소 속:

주 소: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 × 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남해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Tel : 055-860-32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 × 90mm

관 련 법 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266호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남 해 군 수

- 1. 훈령명 :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 폐지안
- 2. 폐지이유 :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시책일몰제 대상사업으로 의결되어 관련 훈령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3월 15일까지(20일간)

- 이 훈령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1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01, 팩스 055-860-3700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4.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055-860-30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훈령 제 호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 폐지 훈령안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훈령]

남해군 훈령 제351호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

제1조(목적) 집단민원과 고질민원 등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원공개법정의 배심원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결정사항에 대한 공신력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남해군민원공개법정(이하 “민원공개법정 “이라 한다)의 배심원제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배심원은 부군수와 민원주무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원사안에 따라 군의원, 교수, 변호사, 유관기관장, 사회단체대표, 기업체임원, 연구기관임원, 각계 전문가, 군청 부서장을 민원공개법정 개정 신청시 마다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8. 27., 2022.12.6.>

② 배심원회의에 대한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민원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1., 2022.12.6.>

제4조(선임) ① 민원공개법정 개정이 신청된 민원처리부서의 장과 직속기관장은 배심원으로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8. 12. 21., 2022.12.6.>

② 배심원 선임은 민원공개법정 개정 3일전까지 한다.

제5조(배심원 신원공개 금지) 배심원에게 대한 사정 청탁이나 외부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원에 대한 신원은 민원공개법정 개정전까지는 공개를 금지한다.

제6조(회의소집) 민원공개법정의 진행시간 단축과 배심원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공개법정 개정일에 배심원회의를 먼저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사결정) ① 민원공개법정은 배심원 2분의 1이상 출석이 있어야 개정되고 의사결정은 출석한 배심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판정관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사기준에 따라 배심원의 평점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배심원 개개인이 평점한 점수를 총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한다.

제8조(결정사항의 효력) ① 배심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한 반복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원공개법정에서 배심원회의 결정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민원공개법정을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을 생략한다.

제9조(참석보상금 지급) ① 민원공개법정의 배심원으로 선임되어 참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배심원에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각종위원회참석수당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참석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내 거주자가 아닌 타지역 거주자가 배심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교통비등 실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320호 2018. 12. 21.>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기획조정통제 규정 등 규정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335호 2020. 8. 27.>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351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기획조정통제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